



제318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  
제1차 자치행정위원회

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2026. 3.

자치행정위원회  
전문위원

#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

## 2. 제안이유

- 국가정책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총 정원 변동사항 : 2,427명 ⇒ 2,436명(+9명)

나. 직급별 정원 변동사항

- 1) 일반직 6급 : 517명 ⇒ 518명(+1명)
- 2) 일반직 7급 : 662명 ⇒ 665명(+3명)
- 3) 일반직 8급 : 562명 ⇒ 566명(+4명)
- 4) 일반직 9급 : 505명 ⇒ 506명(+1명)

다. 인건비 비용 추계액(연간) : 약 537백만원

※ 1년간 인건비 소요액 기준임

라. 주요 변동내용

- 통합돌봄 사업 시행에 따른 필요인력 증원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1

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
다. 관련부서 : 정책기획과

라. 입법예고 : 2026. 2. 5. ~ 2026. 2. 12.(7일간)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정원 2,427명에서 2,436명으로 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임.
-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 조정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, 조문 및 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 ☑ 「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3조(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(이하 “기구”라 한다)와 지방공무원의 정원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

1.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·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2.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,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.
3.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. 다만, 청소·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조(기준인건비제 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,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,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,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 <2020. 3. 10.>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
## 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“지방전문경력관”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⑤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## 비용추계서

### 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총 정원 증원(2,427명→2,436명)에 따른 인건비 증가  
⇒ 6급 +1명, 7급 +3명, 8급 +4명, 9급 +1명  
\*2026년도 소요액 (402백만원/9개월분)

### 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은 2026년 ~ 2030년까지 5년으로 한다
- 인건비 상승률(최근 3년간 공무원 급여인상을 평균값)을 고려한 인건비 추계

나. 추계결과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2030년
총 소요액	402	553	570	587	604
인 건 비	402	553	570	587	604

※ 연도별 인건비는 매년 3% 인상을 가정하여 추계(최근 3년 평균)

다. 재원조달방안: 일반회계 인건비예산(안)에서 집행 가능

### 3.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: 해당없음

4.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장 김 병 기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: 천원)

구 분	1차연도	2차연도	3차연도	4차연도	5차연도	계	
세 입							
세 출	402,750	553,110	569,703	586,794	604,398	2,716,755	
인 건 비	402,750	553,110	569,703	586,794	604,398	2,716,755	
재원 조달	402,750	553,110	569,703	586,794	604,398	2,716,755	
의존 재원	소 계	402,750	553,110	569,703	586,794	604,398	2,716,755
	보조금	140,250					140,250
	지방교부세	262,500	553,110	569,703	586,794	604,398	2,576,505
자체 수입	소 계						
	지방세						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